

의안번호	2208060
의 퇴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5.3.31.
추계번호	25B080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13 (보수교육)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1조의13 (보수교육)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21조의13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수목치료기술자가 보수교육 대상에 추가될 경우 보수교육기관의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산림청장의 지원이 이루어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산림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나무병원에 종사 중인 나무의사는 898명, 수목치료기술자는 889명이고, 2025년 기준 나무병원에 종사 중인 1,240명의 나무의사를 대상으로 총 33회(260시간)의 보수교육이 계획되어 있음
 -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 외에 수목치료기술자도 보수교육 대상이 되면 보수교육인원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나무병원 종사 중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현황 (2024년 기준)

구분	나무병원 수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계 (명)	872	898	889

자료: 산림청

[표 2] 보수교육 추진실적

구분	2022	2023	2024
횟수 및 인원	12회/339명	15회/430명	19회/628명

자료: 산림청

- 한편, 2025년 6월 4일 시행예정인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 제21조의 13제4항¹⁾에 따라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²⁾

- 안 제21조의13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대상자 확대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시설·장비 및 소요경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고, 산림청장의 보수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추가재정소요는 추계하기 어려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제21조의13(나무의사의 교육)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5. 6. 4.]

2) 동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법률 제20546호 산림보호법의 시행일인 2025년 6월 4일 이후에 시행되는 것임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취득자 현황

구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나무의사	1,557	52	237	250	367	477	174
수목치료 기술자	5,845	1,031	842	1,186	849	951	986
합계	7,402	1,083	1,079	1,436	1,216	1,428	1,160

자료: 산림청